

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6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초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
-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상 시상부문에 '산업 재해예방부문' 을 신설하여
- 산업현장의 재해와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공헌한 기업대표와 근로자를 격려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로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안산시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에 산업재해예방부문(기업대표자, 근로자) 을 신설함 (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).
- 나.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산지역협의회의장을 추가함 (안 제5조제1항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연 3,000천원

- $1,500,000\text{원} \times 2\text{명} \times 1\text{회} = 3,000\text{천원}$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4. 7. 19. ~ 2004. 8. 8.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안산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산업재해예방부문(기업체대표자, 근로자) 각 1명

제5조제1항중 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안산지구협의회의장” 다음
에 “,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산지역협의회의장”을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업지원센터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센터소장 유동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업민원담당 우호덕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경수 (행정 2625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시상부문과 인원) ①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 (시상부문과 인원) ①....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산업재해예방부문(기업대표자, 근로자)</u> <u>각1명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 (수상후보자 추천) ①수상후보자는 한 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장, 안산상공회 의소회장,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사장, 반 월도금공업협동조합이사장, 한국노총경기도 본부안산지역지부의장,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경기도본부안산지구협의회의장 <u><삽입></u> 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 (수상후보자 추천) ①..... <u>, 명예산업</u> <u>안전감독관안산지역 협의회의장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